##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87 발의연월일: 2021. 11. 29.

발 의 자:서범수·김용판·김형동

박완수 · 서영교 · 조명희

추경호 • 이은주 • 최춘식

이명수 · 박재호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원직장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에 가입했던 일반직공무원은 2006년부터 시행된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」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지만,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게 되었음.

하지만 복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등은 그 결정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현행 기관단위 협의회만으로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
이에 기관단위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의회 활동의

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 신설 등).

##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연합회)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- 1. 국회 · 법원 · 헌법재판소 · 선거관리위원회
- 2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특별시·광역시 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

제5조의 제목 중 "협의회의"를 "협의회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협의회는 기관장과"를 "협의회 및 연합회(이하 "협의회등"이라 한다)는 소속 기관장 또는 시·도단위 및 전국 단위 기관장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협의회는"을 "협의회등은"으로, "협의회 구성원의의사"를 "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협의회가"를 "협의회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
"협의회와"를 "협의회등과"로, "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를 "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협의회의"를 "협의회등의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"협의회의"를 각각 "협의회등의"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연합회) ① 제2조제2항
	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다음
	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
	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
	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회를 설
	립할 수 있다.
	1. 국회・법원・헌법재판소・선
	<u>거관리위원회</u>
	2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
	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
	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<u>기관</u>
	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
	·도·특별자치도 및 특별시
	<u>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</u>
	특별자치도의 교육청
제5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	제5조(협의회등의 기능) ① 협의
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	회 및 연합회(이하 "협의회등"
항을 협의한다.	이라 한다)는 소속 기관장 또
	는 시・도단위 및 전국단위 기
	<u> 관장과</u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	② 협의회등은

의를 할 때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<u>협의회 구</u> 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(選任)하 여야 한다.

제6조(기관장의 의무) ① 기관장 은 <u>협의회가</u>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한다.

- ② 기관장은 <u>협의회와</u>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최대</u> 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③ 기관장은 <u>협의회의</u>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) 협의회의 설립 단위, 가입 범위,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, 협의회의 협의절차·시기·방법,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 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

 제6조(기관장의 의무) ① <u>협의회등이</u>		
	 ② <u>협의회등과</u> <u>성실</u> 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	
	③ <u>협의회등의</u>	
제'	 7조( <u>협의회등의</u>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) <u>협의회등</u> 의	
	<u>=1=1 0 =1</u>	

정한다	회규칙,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	
	정한다.	